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57억 천 9백만원
- 지출액 : 57억 천 9백만원
- 이월액 : 해당없음.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해당없음.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㉒	지출액 ㉓	이월액 ㉔	집행잔액 ㉕=㉑-㉓-㉔
합 계		5,709,398	5,709,398	5,709,398	0	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과오납금 등	5,709,398	5,709,398	5,709,398	0	0

II . 검토의견

**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 사유지 유상매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예비비 사용**

- 재무국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 사유지 유상매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 57억 9백 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음.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5,709,398	5,709,398	5,709,398	0	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과오납금 등	5,709,398	5,709,398	5,709,398	0	0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사건 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시유지(송파구 장지동 564 등 15필지)에 대해 공공시설을 이유로 무상귀속 요청함.
-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는 실제 전, 답, 잡종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상으로 매각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상매각 대상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서울시의 유상매각은 부당이득이라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소를 제기하여 서울시가 패소(일부)함.

○ 본 건은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시유지(송파구 장지동 564번지 등 15필지)를 유상매각(2012년~2013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유로 무상귀속하고 부당이득을 반환 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일부)하여 연20%의 지연이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지출결정: 2016년 5월 15일, 9월 3일)로 반환금 57억 9백만원(반환원금 51억4천1백만원, 반환이자 5억6천8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상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2016년 4월12일 패소하였음.

〈예비비로 지출한 반환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이자율(%)	기간일수(일)
총 계	5,709,397		729
반환 원금	5,141,063		
반환이자	소계	568,334	
	‘13.7.23~ ‘15.6.25	495,091	5
	‘15.6.26~ ‘15.7.21	73,242	20
	※ 1일 지연이자 : 2,817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소송결과〉

※ 본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LH에게 매각한 토지가 유상매각대상인지 무상제공대상인지 여부임.

「1심 법원(2014.7.11선고)의 판단 : 서울시 승소(유상매각대상으로 판단)」

-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정하는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공공시설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장기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공공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원고(LH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 잡종지, 전, 농경지, 과수원으로 실제 이용되는 곳이 존재함..

「2심 법원(2015.6.25선고)의 판단 : 서울시 일부패소(일부 유상, 대부분을 무상제공대상으로 판단)」

- 이 사건 토지 15필지 중 14필지는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구거, 하천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토지로, 공공용재산으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됨.

-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11,174백만원)중 1필지(6,033백만원)를 제외한 14필지 매매대금(5,141백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 2013.7.23.부터 2015.6.2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

「3심 법원(2016.4.12선고)의 판단 : 서울시 일부패소(일부 유상, 대부분을 무상제공대상으로 판단)」

- 3심(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인하여 해당 토지를 무상제공대상으로 판단하여 서울시는 한국토지공사(LH)에 대해 금5,709백만원(원금+이자)의 반환금을 지급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 소송 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

1)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으며, 연 20%의 지연이자(1일 282만원)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유상매각 처분 당시 상위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²⁾ 및 「舊)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³⁾)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⁴⁾를 종합해 볼 때, 무상귀속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미비하여 불필요한 반환이자금 지급(5억6천8백만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유상매각 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임.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2)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4) 대법원 판단(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 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